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과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지 난 6월초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에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방어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들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계열사 주식보유한도 10% 제한 철폐와 그룹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허용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런 움직임은 국내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한도가 폐지된 이후 외국인에 의한 직·간접적인 투자가 증가해 기존 경영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LG나 동부 등 다른 대기업도 계열금융기관들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적대적 M&A로부터의 안전지대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삼성은 계열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이 많은데, 실제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지분율 8.2%) 외에 에스원(9.7%), 호텔신라(8.0%), 삼성항공(7.8%)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10% 안팎(98년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제일기획(9.7%)의 대주주다.

또한 삼성 외에 LG도 LG증권이 LG전선 주식 4.0%를, LG카드가 LG정보통신 지분 2.2%를 갖고 있으며, 동부는 동부화재가 동부한농화학(10.0%)과 동부제강(7.6%)을, 동부생명이 동부건설(10.2%)을 보유 중이다. 이외에도 금융을 주력핵심사업의 하나로 택한 현대나 대우, SK 등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33%에 달하는데, 이는 SK가 갖고 있는 지분(18.5%)보다 두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들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과거에는 의결권이 없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외국인 주식투자가 완전 자유화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미 마이크론이 마 음먹고 삼성전자에 투자한 13개 투자펀드만 설득하면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주)도 외국인 지분율이 대주주인 SK보다 무려 8% 이상 높아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업계가 이런 건의문을 제출한 데는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 인정을 위한 제반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업계는 IMF 사태 이후 신정부의 신정부의 적극적인 개방 및 외자유치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대외신인도가 급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영투명성 개선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분상승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서 국내기업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코자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 Paradigm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관련 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출자한도 및 의결권 행사는 별다른 제한이 없게 된 데 비하여, 내국인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는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업계에서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삭제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는 금융회사는 동일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있으며,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보유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음은 업계가 건의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개정이유와 방향이다.

업계는 개정이유로 첫째, 지난 1986년 12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타회사 출자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금융·보험업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

< 30대그룹 계열 금융회사 계열사 지분보유 현황 >

(단위 %, '98년말 현재)

그룹	금융회사	출자회사
삼 성	삼성생명	삼성전자 (8.2)
		에스원 (9.7)
		호텔신라 (8.0)
		삼성항공 (7.8)
		삼성중공업 (4.7)
		삼성전기 (1.9)
		삼성엔지니어링 (5.7)
		삼성물산 (9.5)
	삼성화재	제일기획 (9.7)
L G	LG증권	LG전선 (4.0)
	LG카드	LG정보통신 (2.2)
쌍 용	쌍용화재	쌍용중공업 (1.0)
동 부	동부화재	동부한농화학 (10.0)
		동부제강 (7.6)
	동부생명	동부건설 (10.2)

하지 아니하는 대신 계열회사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출자총액 제한규정이 '98년 4월 폐지됨에 따라 같은 취지로 입법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도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둘째,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외국의 금융·보험사는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뿐더러 적대적 M&A조차도 허용되는 상황이므로 국내기업의 의결권 제한은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에서는 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사적독점금지및공정취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국내회사 주식 총수의 10% 초과 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 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유한도 관련 규제 이외에 의결권 제한 법령은 없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서도 각 개별법령에서 금융기관이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에 더하여 우리 나라와 같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삭제함으로써 계열 금융기관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부활시켜야 하며, 만약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삭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중요사항에 대하여서만이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정관 개정 등 소유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예상되는 중요한 경우에는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그리고 의결권 남용 우려시 이의 대안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고시에 반영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일 계열기업군 회사 주식 총계가 일정수준(예 : 총자산의 10%)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면 부작용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런 업계의 입장에 대해 공정위는 30대 그룹 계열금융기관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금융기관을 통한 경제력 집중 심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측 건의대로 이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정**

※ 동 30대 기업집단 계열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공정경쟁 제47호('99년 7월 31일 발간예정)에 게재할 예정입니다.